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066
----------	------

2020년 12월 17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양민규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2월 1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8. ~ 12.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 동의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¹⁾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의를 관련 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19년에 현행 조례를 제정²⁾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1) 「도로교통법」 ('20. 9. 6일 개정, '20. 12. 10일 시행)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 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호와 21호 생략)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19. 5. 16일 제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이용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명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는 다소 중복되는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해 조정도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으로,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을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u>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u>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u>「도로교통법」</u>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2 조 (정 의)</p> <p>--- <u>「도로교통법」(이하 “법”)</u>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p> <p>----- <u>것으로서 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u></p> <p>-----.</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법</p>